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436
----------	-----

2021. 7. 13.  
복지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7. 1. 강남구청장(도로관리과)

나. 상정의결

- 제29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1. 7. 13.)  
“ 수정가결 ”

## 2. 제안이유( 제안설명 : 안전교통국장 김만호 )

-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원칙과 징수단가를 개정하여 원인자 부담금 체납을 줄이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 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원인자부담금 후납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으로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로 한함.(안 제3조제4항)
- 나. 복구비용의 차도구간 최소굴착 및 소규모굴착 간접영향손케구간을 굴착경계로 부터 사방 0.25m구간을 적용하도록 신설함.(안 별표1)
- 다. 복구비용의 감독업무비 적용 요율을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의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른 요율로 변경함.(안 별표1)

##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도로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 (2)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 제6조(권한의 위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1.05.07. ~ 2021.05.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 분석평가지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 5.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상원 )

- 본 건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원칙과 징수단가를 개정하여 도로굴착 복구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 하고자 제출된 안전임
- 안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제4항 중 원인자부담금을 선납 하여야 하는 경우에 현행 “공공사업” 과 “공익사업”을 포함하였던 사항을 삭제하고 이를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로만 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서울시 도로굴착복구 종합개선 대책 추진계획”(시도로관리과 - 3266호. 2019. 2.26)에 따르고자 하는 사항으로 파악된 바, 사유 및 내용 설명이 요구됨. 한편, 지난 3년간 우리구 원인자 부담

금 부과 및 징수 현황(\* 집행부 자료 재구성 별첨2)은 <별첨2>와 같으니 참고하기 바람.

- [별표 1]중 차도의 간접손괴영향구간에 “최소굴착 및 소규모굴착 - 굴착 경계로부터 사방 0.25m 구간)을 신설하고자 하는 바, 사유 및 내용 설명이 요구됨

또한, [별표 1] 복구비용 중 감독업무비를 현행 “도로굴착 면적(복구금액) x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중 건설부분의 공사감리업무 요율”을 “도로복구금액(직접복구+간접복구금액) x 요율<sup>1)</sup>”로 하고자 하는 바, 사유 설명이 요구됨.

한편,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감독업무비 요율 개정에 따른 비교표(\* 집행부 자료 재구성 참조)는 <첨부1>과 같은 바 이의 상세 설명이 요구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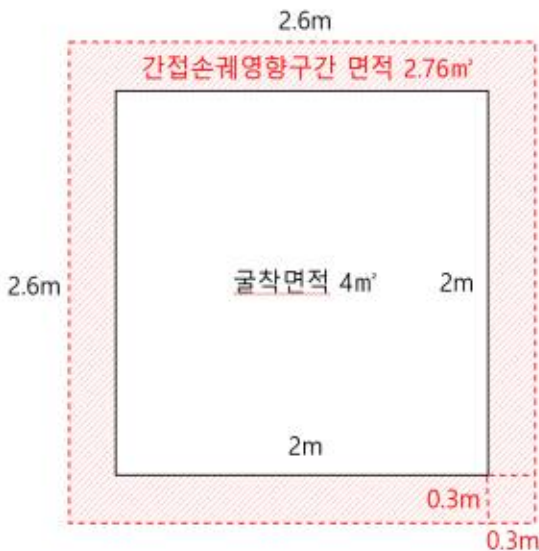
1)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건설엔지니어링 대가) ①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엔지니어링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건설엔지니어링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천재지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엔지니어링비를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엔지니어링비 산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첨부 1>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감독업무비 요율 개정에 따른 비교표

예) 2m × 2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A-2)를 굴착할 때 원인자 부담금 산정

		현 행 (감독업무비 요율 3.02%)		개 정 (감독업무비 요율 6%)
직접 복구비	단 가	183,708원/ m <sup>2</sup>	183,708원/m <sup>2</sup> × 4m <sup>2</sup> = 734,832원	183,708원/m <sup>2</sup> × 4m <sup>2</sup> = 734,832원
간접 복구비	표층, 중층	47,172원/m <sup>2</sup>	(47,172원/m <sup>2</sup> × 2.76m <sup>2</sup> )	(47,172원/m <sup>2</sup> × 2.76m <sup>2</sup> )
	덧씌우기	14,869원/m <sup>2</sup>	+ (14,869원/m <sup>2</sup> × 6.76m <sup>2</sup> ) = 230,700원	+ (14,869원/m <sup>2</sup> × 6.76m <sup>2</sup> ) = 230,700원
감독 업무비	(직접 복구비 + 간접 복구비) × 요율		(734,832 + 230,700) × 3.02% = 29,159원	(734,832 + 230,700) × 6% = 57,931원
총 계			994,691원	1,023,463원(+ 28,772원)



- 현재 '서울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는 감독 업무비 요율 6%로 적용하여 25개자치구 공통 요율로 원인자부담금 징수 중에 있음.

(감독 업무비 요율 단계별 상향 2019년 4%, 2020년 5%, 2021년 현재 6%)

<첨부 2>

원인자부담금허가및부과,징수,체납현황

구분	허가규모				허가규모에따른부과/ 징수/미납금액			허가규모에따른 체납규모/ 체납금액					
	건수	개소수	연장 (m)	면적 (㎡)	부과금액 (원)	징수금액 (원)	미납 금액(원): 도로굴착 허가신청 취소분에 대한금액	체납규모				체 납 금 액 (원)	
								건수	개소수	연장 (m)	면적 ㎡		
2018년													
국가, 지자체 및공기 업	전기	260	353	6739.19	8615.1	1,582,836,150	1,548,939,020	33,897,130	-	-	-	-	-
	지역 난방	45	97	3240.55	7604.51	1,305,708,850	1,305,708,850	-	-	-	-	-	-
	교통 신호 공공 기관	50	93	384.3	490.08	76,374,570	67,790,760	8,583,810	-	-	-	-	-
	상수	1090	1116	11476.1 3	17767.7 3	1,675,014,750	1,582,875,950	92,138,800	-	-	-	-	-
	하수	27	458	13080.3 2	20704.0 9	259,522,050	187,746,520	71,775,530	-	-	-	-	-
	소계	1483	2155	35524.11	55939.11	5,000,688,510	4,775,036,050	225,652,460	-	-	-	-	-
	민간	통신	184	297	8567.22	10256.5 6	2,150,443,950	1,296,191,780	854,252,170	-	-	-	-
가스	244	280	1330	1705.97	218,420,610	198,841,400	19,579,210	-	-	-	-	-	
민간 기타	459	803	3871.76	5967.86	418,831,990	93,586,470	325,245,520	-	-	-	-	-	
소계	887	1380	13768.98	17930.39	2,787,696,550	1,588,619,650	1,199,076,900	-	-	-	-	-	
총계		2370	3535	49293.09	73869.5	7,788,385,060	6,363,655,700	1,424,729,360	0	0	0	0	0
2019년													
국가, 지자체 및공기 업	전기	219	284	7488.2	9495.43	1,850,746,240	1,795,061,480	55,684,760	-	-	-	-	-
	지역 난방	50	75	2183.5	5969.65	1,010,374,930	1,010,374,930	-	-	-	-	-	-
	교통	72	145	5845.7	81890.4	542,267,860	170,579,520	371,688,340	-	-	-	-	-

	신호 공공 기관	34	151	875	1491.88	558,945,160	394,326,440	164,618,720	-	-	-	-	-
	상수	1254	1283	11101.81	15020.29	2,604,424,280	2,523,973,150	80,451,130	-	-	-	-	-
	하수	29	252	9509.87	15123.65	450,455,810	-	450,455,810	-	-	-	-	-
	소계	1658	2190	37004.08	128991.3	7,017,214,280	5,894,315,520	1,122,898,760	0	0	0	0	0
민간	통신	183	237	4860.4	5989.32	1,364,396,980	1,165,888,130	198,508,850	-	-	-	-	-
	가스	291	330	2088.45	2743.37	262,488,360	238,990,040	23,498,320	-	-	-	-	-
	민간 기타	463	789	4872.15	7086.12	464,309,240	245,094,790	219,214,450	-	-	-	-	-
	소계	937	1356	11821	15818.81	2,091,194,580	1,649,972,960	441,221,620	-	-	-	-	-
총계		2595	3546	48825.08	144810.11	9,108,408,860	7,544,288,480	1,564,120,380	0	0	0	0	0
2020년													
국가, 지자체 및공기 업	전기	254	300	10572.3	14064.25	3,188,568,770	3,037,220,690	151,348,080	-	-	-	-	-
	지역 난방	46	66	2277.62	6876.54	1,260,750,830	1,258,182,480	2,568,350	-	-	-	-	-
	교통 신호	70	201	1291.13	1617.48	269,037,050	231,647,960	37,389,090	-	-	-	-	-
	공공 기관	42	175	4173.4	7081.98	833,681,080	798,773,600	34,907,480	-	-	-	-	-
	상수	1052	1074	11744	16861.81	2,417,733,320	2,374,937,010	42,796,310	-	-	-	-	-
	하수	39	132	8373.3	13388.45	121,293,330	112,901,210	8,392,120	-	-	-	-	-
	소계	1503	1948	38431.75	59890.51	8,091,064,380	7,813,662,950	277,401,430	0	0	0	0	0
민간	통신	205	271	9108.8	11008.63	2,584,040,260	2,073,569,490	510,470,770	-	-	-	-	-
	가스	245	265	1468.87	1997.42	461,241,210	421,870,320	39,370,890	-	-	-	-	-
	민간 기타	466	726	5955.22	23149.19	811,361,410	603,897,750	207,463,660	-	-	-	-	-
	소계	916	1262	16532.89	36155.24	3,856,642,880	3,099,337,560	757,305,320	0	0	0	0	0
총계		2419	3210	54964.64	96045.75	11,947,707,260	10,913,000,510	1,034,706,750	0	0	0	0	0

##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 의 : [별표 1]중 차도의 간접손괴영향구간에 “최소굴착 및 소규모굴착,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5m 구간”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 답 변 : 예를 들어 도로를 직접 굴착을 하는 부분이 직접손괴구간이고 그 영향범위에 들어가는 사방 0.25m 구간이 간접손괴 영향 부분인데, 도로를 굴착하게 되면 다른 도로보다 파손율이 빨리 발생하기 때문에 도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감안해서 도로굴착복구비를 징수하고자 신설한 것임
- 질 의 :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감독업무비 요율이 현행 조례 3.02%에서 6%로 개정하려는 사유는 무엇인지
- 답 변 : 기존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이 ‘선허가 후납부’로 운영되다보니 원인자부담금의 체납이 많이 발생되어, 서울시에서 2019년 2월 “서울시 도로굴착복구 종합개선대책 추진계획”을 수립 하였으며, 2019년 5월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를 개정하였음. 따라서 우리구도 서울시 조례의 기준에 따라 감독업무비 요율을 3.02%에서 6%로 변경하려는 것임
- 질 의 :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 중 ‘건설기술용역대가’라는 용어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로 개정된 것으로 아는데 조문을 수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답 변 : 2021년 6월 17일자로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의 조제목이 개정된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음

## 7. 토론 요지

- 토론과정 중, 이재민 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의 조제목이 2021년 6월 17일에 개정이 되었으므로 인용 조문의 조제목을 현행화하기위해 별표1의 후단 중 ‘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건설기술용역대가)’를 ‘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건설엔지니어링 대가)’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됨

##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10. 기타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